

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3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2004. 2. 27.
제 출 자 김철홍 의원 등 10인

□ 제안이유

- 현재 안건을 표결할 때 사용중인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함(안 제41조제1항))
-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(안 제42조제2항)

□ 참고자료

-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

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

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42조 중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를 “제2항부터제5항까지”로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①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41조(표결방법) ① <u>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</u>	제2조(표결방법) ① <u>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2조(투표절차) < 신설 >	제42조(투표절차) ① <u>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
①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제5절 표 결

제 44 조 (표결의 선포)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.

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.

제 45 조 (표결의 참가)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,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 46 조 (의사변경의 금지)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.

제 47 조 (표결방법)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

②의장과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전자·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

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.

제 48 조 (투표절차)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.

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투·개표 상황을 점검·계산하게 한다. <개정 2000.10.5>

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.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